

# HLB 보상위원회 운영규정(안)

제정 2024.05.27

## 제1장. 총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에이치엘비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"위원회"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(직무와 권한)

- "위원회"는 "회사"의 CEO 및 "위원회"에서 판단한 주요 임원(이하 "대상자"라고 한다)의 보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, 의결한다.
- "위원회"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"위원회"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"회사"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## 제4조(위원의 의무)

-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.
- 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제5조(운영규정)

이 운영규정의 제·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## 제2장. 구성

### 제6조 (구성)

- 위원회의 위원 (이하 "위원" 이라 한다) 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여야 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회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까지로 한다.

⑤ 중도 퇴임 등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 발생 시, 차기 이사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구성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.

### **제7조 (위원장)**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**제3장 회의**

### **제8조 (개최)**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연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의 소집시 그 소집일자를 결정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**제9조 (소집권자)**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**제10조 (소집절차)**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의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### **제11조 (회의의 성립 및 결의)**

- ① 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,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정관 및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위원회의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## **제4장 부의사항**

#### **제12조 (부의사항)**

- ①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주주총회에 상정할 등기이사의 보수한도
  2. 등기임원의 연봉조정율에 대한 사항
  3.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
  4. 기타 임원의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#### **제13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**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**제14조 (의사록)**

- ①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 **제5장 보칙**

#### **제15조 (간사)**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를 둘 수 있다.

#### **제16조 (규정의 개폐)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# **부칙**

이 지침은 2024년 05월 27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